

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경 우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간접피해 방지를 위하여 흡연구역 설치 금지장소를 확대(가스충전소 및 주유소)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본 조례 제5조제8호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제8조제1항 단서의 흡연구역 설치 금지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이는 바,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는 다량의 인화물질을 저장·취급·판매하는 장소로서, 흡연

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 및 폭발로 대형 인명·재산상의 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- 특히 가스충전소의 경우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9조 가스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근거로 본 조례 제8조 제1항 단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